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9. 11.06.(수) 09:33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 원 장

표철수 상임위원

허 욱 상임위원

고삼석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김석진 부위원장 (1인)

5. 회의내용

1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o 제5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5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o 제50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- o 제50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o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7 의결사항

- 가. CJ헬로㈜와 KT㈜간 체결한 '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'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건 (2019-53-291)
 - o「CJ헬로㈜와 KT㈜간 체결한 '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'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건」에 대해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
 - 신청인(CJ헬로)이 피신청인(KT)을 상대로 제기한 「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」 (이하 "협정서") 중 협정상 지위 등의 양도 처분 금지를 규정한 제34조 2항의 개정 요구에 관한 재정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, 동 안건의 의결을 보류*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한

* 관련 주요내용

- · 협정서 제34조 2항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등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, 제34조 2항의 내용 중 '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'이 불명확한 점은 없는지, '사전 서면동의' 내용이 일방에게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
- ·특히, 협정서 제34조 2항에 따른 해지 사유 발생 시 제35조에서는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재정 신청의 대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요구 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판단할 예정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o 차기 회의는 11월 13일(수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18)